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8. 14.(수) 09:00~12:0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3499
등록일자	2024. 9. 25.
처리 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2024. 8. 14.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4. 8. 14.(수) 09:00~12: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 장정환(이상 주무위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고병석, 김택우, 허민,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제2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2.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기. 기초발제

- 이창경 주무위원,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의 필요성, 법원장 보임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방안,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복잡한 주제에 관해서 철저한 연구를 해주신 전문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림. 우선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서 개선 필요성, 개선 방향, 의견수렴절차의 방식, 독립된 기구에 의한 심의·자문 절차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욱 위원

-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함
- 고법부장의 사기 진작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장 후보군 대상에 고법부장 또는 해당 권역 고법판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임
- 법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하여는 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추진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보임 기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기수가 높아질 필요가 있고, 특히 수석부장과의 기수 차이가 너무 적게 나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조현욱 위원께서는 법원장 보임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전제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임.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은 법원장 보임제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병직 위원

-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된 지 5년 정도 되었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되고는 있으나, 향후 5년 정도 더 시행하면서 보완할 경우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임. 다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법원장 보임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충분히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때 법원 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경춘 위원,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법원장 보임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처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제도 설계 당시 기대했던 추천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나, 추천과정 자체의 개선책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함
- 또한,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수렴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

○ 이창경 주무위원

-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에 처음 시범실시 되었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2022년 연말 예규를 제정하고 2023년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로 실시되었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추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추천제의 핵심은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서 법원장을 선출해 나가는 것인데, 전문위원 연구반의 보고서는 추천제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투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음

○ 위원장

- 의견수렴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 이창경 주무위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임
- 의견수렴의 방식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추천·배제 의견 및 기타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 시스템인 코트넷 등을 이용하여 쉽게 구현할 수 있음.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사실상 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취해질 수도 있는 것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그렇지 않음. 전국의 법관 또는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임

○ 이경춘 위원

- 종전 추천제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입후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한 후 결과를 집계해서 다득표순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보임
-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전 의견수렴절차는 특정한 후보자의 입후보 없이 모든 법관들로부터 법원장 후보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다수 법관들이 사실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면이 있음

○ 이창경 주무위원

- 특정 후보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법원장 보임이 필요한 법원의 목록’과 ‘보임 대상의 기수 범위’를 설정해 주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임

■ 다음과 같은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영화 위원

- 법원 내부의 여러 논의를 통해 2019년에 처음 도입되어 제대로 실시된 지 1년 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선출제적 요소를 없앤다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법원 내에서 법원장을 보임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며, 법원장이 수평적 리더로 자리 잡고 동료 법관의 이미지를 갖는 것도 궁정적으로 보였음
- 국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화두는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인데, 법원장 선출문제가 재판지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음
- 선불리 선출제를 배제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제도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전원열 위원

- 법원장 보임제도 자체는 국민들의 큰 관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법원



장 보임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법관인사제도,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완전한 법관인사 이원화의 모델은 영미식 재판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음. 영미는 기본적으로 1심과 2심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는 이원화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와 출발지점이 같았던 일본의 법관인사제도에는 이원화 제도가 없음. 우리가 추구하는 이원화의 목표가 우선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법원장 보임제도를 검토할 때 법원장 보임을 통해 구성원들이 좀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고법부장제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법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방향에 더 비중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 할지부터 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적으로 법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재판업무 자체에서 얻는 자긍심 고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장 보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 또한 법원장 보임제도를 논의할 때 우리나라가 사실상 도시국가화 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서울, 인천 등의 대규모 도시 법원장과 나머지 지역의 법원장 간 구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법원장 후보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인기투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에 참여한 소속 법관’과 ‘해당 추천에 따라 보임된 법원장과 함께 근무하는 소속 법관’ 간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법원공무원은 이미 선출된 법원장 후보에 대한 사후적 의견제출 기회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의 대표성 한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투표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제도 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만족이나 자긍심 측면보다,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김영훈 위원

- 회의 자료 16면에서 21면 사이에 역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추천제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는 부분들이 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180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체계를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한편, 회의 자료 23면에 제시된 ‘재판업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온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재판을 잘하는 법관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사법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법원장 보임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함
- 소속 법관들만의 천거 및 투표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함.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 법원 내부의 훌륭하신 분들을 법원장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선출제적 요소의 배제에 치중하여 지금껏 진행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김영훈 위원님께서는 건의문 중 개선방안 첫 번째 문단의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입장인가?

○ 김영훈 위원

- 맞음. 추가적으로 지향점 등 적절한 부분에 추천제가 시범실시 후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능도 했었다는 점을 표현하였으면 좋겠음

○ 위원장

- 재판을 잘하는 사람이 법원장이 되면 좋겠다는 연구반의 의견은 단순히 재판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춘 것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함
- 차별적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폭넓은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면 그 후 추천제 또는 투표제의 구체적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수렴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것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맞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결



정 사항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 다음과 같은 이경춘 위원, 전원열 위원, 조현욱 위원의 의견,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이경춘 위원

-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 인사 발령으로 인해 선출권자 집단과 실제 근무 집단이 달라지게 될 경우의 대표성 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전문위원 연구반의 의견이 전체 법관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해서 좀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임
- 회의 자료 17면 설문조사를 보면, 과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호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임.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 법관들의 생각이라면,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회의 자료 17면에 제시된 2017년 설문조사를 보면서, 임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연차 법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법원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하여 등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음
- 미국의 연방법관은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 상당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종신직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인원도 800명 정도에 불과함. 또한, 미국 법관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State Court나 County Court의 법관들은 처음 시작할 때 Limited Jurisdiction Judge로서 제한적인 자격을 가지고 시작한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Full Jurisdiction Judge로 활동할 수 있음
- 저연차 법관 입장에서 ‘법원장 호선제’로 할 경우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므로 좋을 수 있겠지만, 이 결과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도출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조현욱 위원



- 추천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법원장을 대법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법원 내부의 상향식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도가 있었고,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법부장 중에서도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다양한 목적의식이 어우러져 추천제가 실시된 것이라고 생각함
- 실시 과정에서 인기투표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다만, 추천제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기존의 추천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의 개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천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님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위원장

- 회의 자료 17면에 제시된 통계와 관련하여 당시 법관의 수와 응답한 법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회의 자료 16면을 보면 전국 약 3,0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180명 정도가 응답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견의문의 개선방안 두 번째 문단과 같이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위원 다수 의견인데, 개별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재판·행정업무의 적임자를 보임하여 국민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법판사도 후보군에 넣는 것은 어떤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욱 위원

- 기본적으로 후보군에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 저의 의견임

○ 차병직 위원

-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낫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음. 각급 심급별 또는 지방법원 별로 법관을 따로 임용해서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이 없는 것을 전



제로 하면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군을 제한한다면 고등부장이나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법원장 보임기회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게 되어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있어 보임

○ 이경춘 위원

- 법원장 보임 후보군의 범위에 고등법원 소속 법관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이유가 고등부장의 기대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고법판사의 경우에도 법원장 보임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인지 궁금함

○ 이창경 주무위원

- 고법판사의 경우 이원화 제도의 시행 후 보임되었으므로 지방법원장에 대한 기대이익이 적으나, 고등부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시작 되었음

○ 이경춘 위원

- 이 쟁점은 고등법원장의 임기를 1년씩 단축해서 법원장 보임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임.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고등부장들에게 법원장 보임기회가 보장되고 난 후에는 이 부분은 해결되는 것이 아닌지?

○ 이창경 주무위원

- 회의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법원장 보임까지의 기간이 현저히 지연된 측면이 있으며, 고등부장님들 중에서는 지방법원장 보임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경춘 위원

- 건의문 개선방안에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림

○ 이창경 주무위원

- 지방법원장 보임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는 절차 측면의 문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지방법원장 후보군의 범위에 관한 쟁점임. 이원화 제도에 따라 각 그룹에서는 이 쟁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전문위원 연구반의 다수 의견에 따라 건의문이 작성된



것임

○ 이경춘 위원

- 건의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건의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음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영훈 위원, 조현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음.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유지하되 천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투표 방식의 선출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추천제를 대신할 새로운 보임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위원

- 회의 자료 16면에서 21면까지 설문조사 분석 결과가 나와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별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논의만으로 소속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절차를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 건의문 지향점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일정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으면 좋겠고, 개선방안에도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절차에서 더 나아가 전체 법관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문을 거치는 등 새로운 법원장 보임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과 같은 취지로 표현한 후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폐지를 확정적으로 거론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봄

○ 조현욱 위원

- 건의문 지향점 내용 중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입되었으나’라는 언급 후에 뒷문장이 나오게 되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단점이 많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므로,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도입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



여기여한 점이 있으나'와 같은 취지로 변경하여 긍정적인 면도 함께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임

다. 제4차 회의 추가 논의 결정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법원장 보임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소속 법관뿐 아니라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천거 의견 이외에 배제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제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출된 의견에 대법원장이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쟁점이 많은 관계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방법원장 보임 후 보군 범위에 관한 쟁점은 다음 회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제4차 회의에서 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 10:42경 정회

※ 10:58경 속회

3.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가. 기초발제

- 장정환 주무위원, 인공지능과 사법, 사법절차 인공지능 적용 해외 사례, 국내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 현황, 민간 리걸테크 현황,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전원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전원열 위원
 - 법원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AI를 활용하여 법관, 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주의할 점은 AI 기술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사업 중 사업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선 법관들 중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법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도 계획적으로 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함

○ 장정환 주무위원

- 사법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선별하여, 다양한 모델 중 실질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등을 나누어 준비하고 있음
- 또한 올해 ‘BPR/ISP’라는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음. 법원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김영화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장정환 주무위원의 답변, 이경춘 위원, 차병직 위원, 조현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영화 위원

- 엄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재판업무의 특성상 AI 도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AI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등에 따라 AI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노력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AI 개발에 앞장서고 그에 필요한 윤리적·법적 원칙을 준비하는 작업에는 당연히 동의함
- 2024년 4월 한국일보에서는 최초로 생성형 AI와 관련한 취재윤리를 제정하였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재윤리에 ‘인간의 감독’이라는 항목을 넣었는데, 이는 인간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AI가 생성한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함. 사법부에서도 ‘헌법상 법관에 의해서 재판 받을 권리’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함

○ 장정환 주무위원



-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가이드를 마련할 때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경춘 위원

-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연구반의 결론에 동의함

○ 차병직 위원

-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은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께서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해 보이며, 위원회 차원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AI 분야에 관심을 놓지 말라는 적극적인 당부 정도로 결론을 내어도 될 것이라 생각함
- 건의문의 지향점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인 지향점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문단으로 합쳐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함

○ 조현욱 위원

- 법관의 업무에서 기록의 사실관계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과도한 업무량은 결국 재판지연 문제로 이어지므로 재판업무에서도 AI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그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건의문 내용에 동의함. AI 활용으로 인해서 업무경감은 물론 국민들을 위한 신속한 재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다음과 같은 김영훈 위원, 전원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김영훈 위원

- 건의문이나 법적·윤리적 기준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함
- 다만, 변론주의를 취하는 재판제도 하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함께 AI에 대한 대비가 될 필요가 있음
- 민간 리걸테크 현황에 관한 회의 자료 52면을 보면 국내 업계가 과점 체제, 독점 체제로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음. 국내 업계는 하급심 판례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해 왔음. 변호사들도 풍부한 하급심 판례를 다루고 있는 업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단체 계약을 맺어주기도 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독점화될 경우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변협에서는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여 공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판결문 공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판결서 익명화인데, 회의 자료 17면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판결서 익명화에 AI가 활용되는 사례가 기술되어 있음. 익명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사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판결서 익명화 작업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판결문 공개 정책까지 이어지길 바람. 그리고 전면공개 단계에 이르는 동안 사법부와 대 한변협이 향후 일정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음

○ 전원열 위원

- 추가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음.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수 있는 분야가 민사소액재판의 온라인 진행임. 소액재판에 관하여 소장 제출,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까지 전적으로 온라인화해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천 드립.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소장 제출 시부터 주요 요건 사실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판결서 익명화와 관련하여, 익명화 작업은 인공지능이 수행하기 쉬운 영역에 속한다고 알고 있음. 다만 김영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이 최종적으로 검수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와 익명화 정도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등과 관련한 결정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딥러닝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 ②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 필요



-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함께 재판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기본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
 - ② 신뢰성 원칙
 - ③ 합법성 원칙
 - ④ 책임성 원칙
 - ⑤ 투명성 원칙

4. 제4차 회의 안건 설명

-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 이창경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5. 제5차 회의 안건 선정

- 위원장, 제5차 회의(10월 예정) 안건으로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함

6.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7.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일부 비공개
3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공개
4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 일시: 2024. 9. 25.(수) 14: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